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 3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85호)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13호)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70호)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72호)
-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28호)

2025. 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종수

목 차

I.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208585)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208613)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3
3. 주요내용	4
III.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2208670)	7
1. 제안경위	7
2. 제안이유	7
3. 주요내용	7
IV.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208672)	9
1. 제안경위	9
2. 제안이유	9
3. 주요내용	10

V.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2208728)	11
1. 제안경위	11
2. 제안이유	11
3. 주요내용	12
VI. 총괄검토	13
1. 제안배경	13
2. 제정안들의 구성체계	14
3. 총괄 검토의견	15
4. 국토교통부 의견	16
VII. 조문별 검토	18
1. 목적(안 제1조)	18
가. 검토의견	19
나. 국토교통부 의견	20
2. 정의 (안 제2조)	21
가. 검토의견	25
나. 관계기관 의견	30
1) 국토교통부	30
2) 행정안전부	31
3) 전라남도	31
3. 피해자의 권리	32
가. 검토의견	33
4. 2차 가해 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36

가. 검토의견	39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43
1) 국토교통부	43
2) 법무부	43
3) 유가족협의회	44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45
가. 검토의견	45
나. 관계기관 의견	45
1) 국토교통부	45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46
6.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진상규명조사 등	47
가. 검토의견	64
나. 관계기관 의견	67
1) 국토교통부	67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68
3) 행정안전부	68
7.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70
가. 검토의견	75
나. 관계기관 의견	78
1) 국토교통부	78
2) 행정안전부	78
8. 지원·추모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단 등	79
가. 검토의견	84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89
1) 국토교통부	89
2) 행정안전부	90
3) 유가족협의회	90
9. 지원의 원칙 및 참여 보장	92
가. 검토의견	95
나. 관계기관 의견	100
1) 국토교통부	100
2) 인사혁신처	101
3) 전라남도	102
10. 지원금	103
가. 검토의견	106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09
1) 국토교통부	109
2) 보건복지부	109
3) 법무부	110
4) 유가족협의회	111
11. 심리지원	112
가. 검토의견	113
나. 관계기관 의견	116
1) 국토교통부	116
2) 보건복지부	116
12. 근로자의 치유휴직	117
가. 검토의견	118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21
1) 국토교통부	121
2) 고용노동부	121
3) 유가족협의회	121
13. 교육비 지원	122
가. 검토의견	124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27
1) 국토교통부	127
2) 유가족협의회	127
14. 긴급복지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128
가. 검토의견	130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34
1) 국토교통부	134
2) 보건복지부	135
3) 유가족협의회	135
15. 법률지원	136
가. 검토의견	136
나. 유가족협의회 의견	137
16. 금융부담 완화	138
가. 검토의견	138
나. 국토교통부 의견	139
17. 공동체 회복	140
가. 검토의견	143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45

1) 국토교통부	145
2) 행정안전부	145
3) 유가족협의회	145
18. 트라우마센터 설치	146
가. 검토의견	146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48
1) 국토교통부	148
2) 보건복지부	149
3) 광주광역시	149
4) 유가족협의회	149
19. 추모사업	150
가. 검토의견	153
나. 정부 의견	155
1) 국토교통부	155
2) 행정안전부	156
20. 사단/유가족협의회 및 재단	157
가. 검토의견	160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65
1) 국토교통부	165
2) 기획재정부	165
3) 행정안전부	166
4) 유가족협의회	166
21. 상황보고 및 사고조사위원회 · 사고조사단 구성 특례	167
가. 검토의견	168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70
1) 국토교통부	170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71
3) 행정안전부	172
4) 유가족협의회	172
22. 보칙	173
가. 검토의견	177
나. 국토교통부 의견	180
23. 벌칙	181
가. 검토의견	186
나. 국토교통부 의견	188
24. 부칙	189
가. 검토의견	191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93
1) 국토교통부	193
2) 유가족협의회	194

I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2208585)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108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5.

2.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12·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 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 다.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자 등 중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라.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Ⅱ.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208613)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5.

2.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참사임.

대형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의 법제도는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부여함(안 제4조).

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위원회의 사

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희생자가 15세 미만인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경우 국가가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9조).

차.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및 유가족의 자조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국가의 출연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조직으로부터 12·29 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타. 국회가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Ⅲ.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2208670)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5. 3. 5.
3. 회 부 일 : 2025. 3. 7.

2.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제1절).

- 나.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 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IV.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208672)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3. 5.
3. 회 부 일 : 2025. 3. 7.

2.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이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의료적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 라.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및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며,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
- 마. 국회 및 유가족단체 등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및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

V.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2208728)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26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2.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29여객기참사’)가 발생함.

한편 정부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12·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9조).

VI. 총괄검토

1. 제안배경

지난 2024년 12월 29일 승무원 6명과 승객 175명을 포함한 총 181명이 탑승한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¹⁾)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²⁾하였음. 이로 인해 승무원 4명과 승객 175명, 총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항공기가 전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음.

제정안은 이번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희생자에 대한 추모 또는 그 진상규명을 위하여 제안된 것임. 특히, 지난 2월 6일 제2차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12.29여객기참사특위’라 함)에서 유가족대표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1)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4.12.29.)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HL8088(B737-800) 동체 착륙 후 활주로 초과하여 방위각 시설물 충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25.1.27.

2. 제정안들의 구성체계

김은혜의원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피해자지원 등, 제3장 추모사업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 총 5개의 장에 32개 조문의 본칙과 6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이수진의원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원·추모위원회 등, 제3장 피해구제 및 지원,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제5장 추모사업 등, 제6장 상황보고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 총 8개의 장에 38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문금주의원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3장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총 6개의 장에 73개 조문의 본칙과 3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진숙의원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제3장 공동체 회복 지원, 제4장 상황보고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총 6개의 장에 44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삼석의원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3장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총 6개의 장에 73개 조문의 본칙과 3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총괄 검토의견

12·29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지난 2월 6일 제2차 12.29여객기참사특위에서 유가족대표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음.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과거 참사의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바 있음.

다만, 문금주의원안과 서삼석의원안의 경우 12·29여객기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29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항공사고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의 중복,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 가능성, 국제기준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항공사고조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

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의 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제정안 간 세부적인 지원범위, 수준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국토교통부 의견

사고 특성상 피해자 범위가 명확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를 결정할 실익이 적고, 사고수습 참여자 등이 피해자로 추가될 경우 유가족과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으로 조사위원회 설치의 혼선이 우려되고, 국회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임명 요청권은 조사결과의 신인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그 외에 특별법으로 유가족 건의를 고려한 종합적 피해지원이 기대되며, 치유휴직 확대(6개월→1년), 자문단 등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하여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Ⅶ. 조문 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규율 사항	-	-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 규명	-	문금주의원 안과 동일
	희생자 추모, 신속한 피해지원	희생자 추모, 신속한 피해지원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권리보장 대책 수립	
목적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피해자의 일상과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공동체 회복,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	이수진의원 안과 동일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

각 제정안의 목적은 표현 상 일부 차이는 있으나, “12·29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추모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이라는 취지를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각은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 및 입법취지가 적절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임.³⁾

한편, 문금주의원안과 서삼석의원안은 추모 및 피해 지원 외에 12·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

3) 참고로,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선행 참사 관련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목적을 규율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후속 조문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번 참사의 특성과 현행 항공사고조사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12·29여객기 사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신속한 구제 및 공동체 회복 등 제정안 목적에 동의함.

2. 정의 (안 제2조)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29여객기사고”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12·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며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12·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12·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12·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사고 당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에 탑승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2·29여객기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2·29여객기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가. 12·29 여객기 사고 당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가.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 제3항의 12·29여객기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2·29여객기참사 당시 긴급구조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2·29여객기참사 당시 긴급구조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2·29여객기참사 당시 긴급구조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2) 그 밖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2) 그 밖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말한다.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말한다.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2차 가해”란 신문·잡지·방송	5. “유가족단체”란 유가족으로 구성된	5. “유가족단체”란 대통령령으로	5. “유가족단체”란 유가족으로 구	5.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유가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도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체를 말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성된 단체를 말한다.	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사고·참사	24.12.29. 제주 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	24.12.29. 제주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	24.12.29. 제주 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	이수진의원안과 같음	
희생자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피해자	탑승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	-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탑승자 중 희생자 외의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	-
	-	-	다음 사람 중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	-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	-	-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 근 에 서 사 업 장 을 운 영 하 거 나 근 로 활 동 을 하 고 있 던 사 람
	-	-	- 그 밖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무안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무안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무안군)
기타	2차 가해	유가족단체	유가족단체 (대통령령 위임)	이수진의원안과 같음	유가족단체 (100인 이상)

제정안 제2조는 제정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인데, 안 제2조제1호는 ‘12·29여객기 사고 또는 참사’에 대한 정의로, 이번 사

고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고 개요를 참고하여 사고 또는 참사의 정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비보고서 중 비행 및 사고 개요 】

- 2024.12.29.(일) 04:30(한국시간)경, 제주항공 여객기(HL8088, B737-800)는 승무원 6명과 승객 175명을 포함한 총 181명이 탑승하여, 태국 스완나품국제공항 (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 VTBS)에서 이륙하였다.
- 12.29. 08:54:43(시:분:초), HL8088은 무안국제공항 관제탑과 착륙을 위한 최초 교신을 하였고, 관제탑에서는 활주로 01 착륙을 허가하였다. 착륙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활주로 01로 접근 중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08:57:50초에 전달받았다. 08:58:50초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기록은 동시에 중단되었다.
- 조류 충돌 시점은 분석 중으로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며, 항공기는 복행 중 08:58:56초에 조류 충돌로 인해 복행을 하고 있다고 비상선언(Mayday, 3회)을 하였고, 활주로 01 좌측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활주로 19로 착륙하기 위해 우측으로 선회 후 활주로에 정대하여 접근하였다.
- 항공기는 활주로 19로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하여 방위각(Localizer)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운항 및 객실 승무원 4명, 승객 175명, 총 179명이 사망하였으며, 객실 승무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다음, 안 제2조제2호는 ‘희생자’에 대한 정의, 같은 조 제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간 희생자 및 피해자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음.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과 문금주의원안에 따르면 희생자는 12·29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에 탑승하여 사망한 탑승객을 말하고, 전진숙의원안과 서삼석의원안에 따르면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에 탑승하여 사망한 탑승객에 더하여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사망한 사람을 희생자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의 정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⁵⁾.

다음, 김은혜의원안 및 이수진의원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①희생자의 유가족, ②12·29여객기 참사로 인해 부상당한 탑승자 및 ③각각의 가족을 말하는데, 문금주의원안과 전진숙의원안은 ①희생자의 유가족과 ②심의위원회가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i) 12·29여객기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ii)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서삼석의원안은 iii) 12

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 29여객기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도 피해자에 추가하고 있어 그 범위가 김은혜의원 안 및 이수진의원안보다 넓음.

희생자 및 피해자에 관한 정의 규정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지원 및 추모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법 제정의 목적에 맞게 이번 참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 및 범위를 등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⁶⁾

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또한, 안 제2조제4호는 ‘피해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은혜의원안, 문금주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전라남도 무안군)을, 이수진의원안 및 전진숙의원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피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⁷⁾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일시/지역) '24. 12. 29.(일) 17:12 / 전라남도 무안군
* (피해수습 지자체)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선포 배경) 사고의 인명피해 규모, 국가적 차원의 행정·재정상 지원 필요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포(대통령공고 제356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과

선포요건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 건의	선포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 요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 대통령)	대통령 재가
12.29.(일)	12.29.(일)	12.29.(일)	12.29.(일)

- (지원사항) 「재난안전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법적 지원
 - (생활안정지원) 사망·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생활 구호비, 교육비, 소상공인 지원비, 농·어·임·염업 지원비 등 7종 지원
 - (간접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입영연기, 통신요금 감면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별지원
 - (피해수습지원) 시설 복구, 피해자 수색·구조, 오염물 방제·처리, 추모사업, 파손된 주택 철거, 구호비용 감정평가 등 6종 지원

자료 : 국토교통부

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지역”이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피해지역”이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정안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해지역의 경우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 조치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대상이 되며,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이 이루어지는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다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거주자로, 이를 고려한 적절한 피해지역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김은혜의원안 및 문금주의원안은 특별지원방안 시행대상을 피해지역이 아닌 침체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입법례와 같이 사건명, 희생자·피해자의 개념 및 피해지역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①사건명과 관련된 정의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는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 방위각시설과 충돌한 사고로, “외벽 충돌”, “착륙 도중 폭발”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음, ②피해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등도 피해자의 범위에 추가할 경우 유가족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2) 행정안전부

김은혜의원안 및 문금주의원안에 따른 피해지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어 피해지역을 무안군으로 한정하는 경우 실제 피해자 거주 지역과 지원대상 지역이 불일치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지역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전라남도

이번 사고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해지역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피해자의 권리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이수진의위원안	문금주의위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가. 검토 의견

구분	이수진의위원안	문금주의위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피 해 자 의 권 리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고 <u>의견을 개진할 권리</u>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u>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u>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필요한 지원의 예시로 돌봄지원 포함	-	필요한 지원의 예시로 돌봄지원 포함	-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 제3조는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여러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관련하여,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 제3조제1호는 피해자에게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사고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항공당국, 항공사, 제조사, 보험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고, 해당 사고조사 결과는 각 이해관계자의 책임 및 배상 문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 제3조제1호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사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iton, ICAO)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사고조사기관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조사에 참여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ICAO DOC 9962

3.2.2 The intent of “independence” is that the [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 shall be functionally independent, in particular from the State civil aviation authorities responsible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light operation, maintenance, licensing, air traffic control or airport operation and, in general, of any other party whose interests could conflict with its ability to conduct its work, without interference or influence from other organizations.

8.5.2 Victims and their families are not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참고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⁸⁾

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4. 2차 가해 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문금주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3조(2차 가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이하 “2차 가해 행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이하 “2차 가해 행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2차 가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12·29여객기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제38조(2차 가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12·29여객기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대하여 2차 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2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한 자	제77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희생자 및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	대하여 2차 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8조를 위반하여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밖에 토론회 · 간담회 · 기자회견 · 집회 ·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사람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검토의견

제정안은 피해 지원 등을 위한 국가등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2차 가해 행위 방지 대책 수립 책무를 규정하거나 2차 가해행위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국가 등의 책무	국가·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 법적·행정적 지원 포함 적극적 조치 의무 - 홍보·교육 실시 의무	국가의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시행 의무	-	국가의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의무	-
처벌	-	2차 가해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차 가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차 가해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난 2월 6일 제2차 12.29여객기참사특위에서 유가족대표가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되어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⁹⁾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2일 ‘여객기 참사 관련 사이버 명예 훼손·모욕 대응 수사단’(118명)을 구성하여 3월 3일 현재 총 110건을 수사 중이고, 이 중 48명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됨.

9) 참고로, 지난 1월 17일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어 의결된 바 있음.

【 온라인 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수사 현황 】

검거 인원(명)	유가족 모욕	유가족 명예훼손	피해자 명예훼손
48	18	28	2

출처 : 경찰청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김은혜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이수진의원안과 전진숙의원안은 국가의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수립·시행 의무와 함께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며,

문금주의원안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희생자 및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 피해자 등을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중 2차 가해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은 현행 「형법」,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¹⁰⁾에 따라 구체적인 죄의 양태와 실행 방법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처벌규정이 있는 상황인바, 현행 형벌 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법익 보호 가능성을 감안하여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여부에 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벌칙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제정안에서 금지대상인 2차 가해

10)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행위를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국가·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에서 자행되는 모욕성 게시글을 방지하고, 희생자·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피해자·피해지역 지원 외에 사고의 재발방지도 국가·지자체의 공적 책무로 명시하여 특별법의 근본적인 피해구제 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

이수진의원안에 따른 2차 가해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2차 가해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현행법으로도 양형 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다른 사회적 참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족협의회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현행 「형법」과 상이하여 법체계를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 기사고에 관련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 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 기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 기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 기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에 대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법률은 12·29여객기참사 관련 피해 구제 등에 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제정안이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임을 밝혀 법률 간 충돌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이 기대됨.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문금주의원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경우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항공안전상시평가('26년 예상)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6.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진상규명조사 등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2·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2·29여객기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2·29여객기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2·29여객기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2·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2·29여객기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2·29여객기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2·29여객기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과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유가족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표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2·29여객기참사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경과에 관한 정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2·29여객기참사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경과에 관한 정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보를 제공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징계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징계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을 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제26조(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⑧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	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⑧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절 청문회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절 청문회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8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검증) ①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12·29여객기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8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검증) ①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12·29여객기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2·29여객기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2·29여객기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2·29여객기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2·29여객기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그 밖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⑫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2·29여객기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12·29여객기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2·29여객기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70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⑫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2·29여객기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12·29여객기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2·29여객기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가. 검토의견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2장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2장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제7조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제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1명, 유가족협의회 추천 2명 포함)	제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9명)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	의사의 공개	제16조	의사의 공개
제17조	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제17조	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2조	징계위원회	제22조	징계위원회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4조	진상규명조사	제24조	진상규명조사
제25조	조사신청	제25조	조사신청
제26조	각하결정	제26조	각하결정
제27조	조사의 개시	제27조	조사의 개시
제28조	조사의 방법	제28조	조사의 방법
제29조	동행명령	제29조	동행명령
제30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30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31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1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2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2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절 청문회		제3절 청문회	
제33조	청문회의 실시	제33조	청문회의 실시
제34조	국가 등의 지원	제34조	국가 등의 지원
제3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제3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제36조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제36조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문금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37조	증인등의 선서	제37조	증인등의 선서
제38조	증인등의 보호	제38조	증인등의 보호
제39조	검증	제39조	검증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0조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40조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41조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1조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2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2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3조	책임의 감면	제43조	책임의 감면
제44조	운송비·여비 등	제44조	운송비·여비 등
제45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5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6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6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7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8조	12·29여객기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8조	12·29여객기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문금주의원안과 서삼석의원안은 12·29여객기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사무처 및 자문기구의 설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동행명령, 청문회의 실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등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12·29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고조사를 진행 중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른 사고조사는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과 분리¹¹⁾되기는 하나,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

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고¹²⁾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확보와 관련하여,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¹³⁾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 수행과 함께 중요 사항의 상충 가능성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문금주의원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항공당국, 항공사, 제조사, 보험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고, 항공사고조사의 결과는 각 이해관계자의 책임 및 배상 문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유가족협의회가 진상조사에 직접 관여하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

12)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제26조(안전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우,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⁴⁾

참고로, 각 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진상조사 등과 관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⁵⁾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12·29여객기 사고를 조사 중으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조사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만일 조사기관 간 상이한 조사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항공업계, 보험사 등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우리나라 항공 사고조사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저하가 우려됨.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조사 대신에 이수진의위원안, 전진

14)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사고조사기관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조사에 참여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15) 참고.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상 진상규명 관련 조문

숙의위원안에 따른 “자문단의 운영” 규정 등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경과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를 돕는 대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조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 재난 대응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에는 의견은 없음. 다만, 국제표준에 근거한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하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경우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항공안전상시평가('26년 예상) 결과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3) 행정안전부

특별조사위원회는 12·29여객기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16)에 따른 기존 행정기관과 성격·기능이 중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되는 위원회 설치의 제한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등이 수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7.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50조(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가족협의	제6조(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	제50조(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회가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 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유가족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표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 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 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재심의) ① 제52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심의)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재심의) ① 제52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2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1절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제1절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제1절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 의위원회	
제50조	12·29여객기참 사피해구제심의 위원회	제6조	12·29여객기참 사피해구제심의 위원회	제50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 회
제51조	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11명, 유가족협의회 추천 2명 포함)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9명)	제51조	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9명)
제52조	피해자 인정 신 청 등	제8조	피해자 인정 신 청 등	제52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53조	재심의	제9조	재심의	제53조	재심의

제정안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범위와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 및 이수진의원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①희생자의 유가족, ②12·29여객기 참사로 인해 부상당한 탑승객과 ③그 가

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피해인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는 이번 참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에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반면, 문금주의원안과 전진숙의원안은 ①희생자의 유가족과 ②심의위원회에 의해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i) 12·29여객기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ii)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서삼석의원안은 이에 더해 iii)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희생자 유가족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인정절차를 두어 폭넓게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개별·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누락 없이 포함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 대책 시행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참사의 특성과 실제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

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¹⁷⁾

1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재심의)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등도 피해자의 범위에 추가할 경우 유가족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7조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원·추모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지원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설립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기능을 통합하여 1개의 위원회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원·추모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단 등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21조(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및 침해된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사단 또는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재단 및 제28조에 따른 유가족협의회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재단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12·29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⑥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피해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 2. 항공,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침체된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⑦ 지원·추모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⑦ 지원·추모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30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	⑥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침체된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③ 그 밖에 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자문단의 운영) ①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2. 제28조에 따른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③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자문단의 운영) ①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이하 “자문단”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제30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2. 제2조제5호에 따른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③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0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지원·추모위원회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	위원장 1인(국무총리) 포함 20인 이내		위원장 1인(국무총리) 포함 9인 이내
		당연직 : 관계부처 장관, 피해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위촉직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촉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 임명·위촉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함)		
	심의 사항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
		추모사업	추모사업	추모사업	추모사업
		재단·사단 선정 등	재단·유가족협의회 선정 등	재단 선정 등	재단 선정 등
지원조직	목적	-	(지원조직)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단)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지원·추모위원회 사무 및 운영 지원			-
	필수·임의	-	(지원조직) 임의기구(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지원단) 필수기구(지원단을 둔다)			-
	정보 체계	구축·운용 근거 마련			-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	
자문 단	목적	-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의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		-
	구성	-	10인 이내 국회 추천 5인 이내 유가족 단체 추천 5인 이내		-

김은혜의원안 제21조, 이수진의의원안 제6조 및 전진숙의원안 제30조는 피해자 지원 사항, 추모사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원·추모위원회

설치 근거를, 서삼석의원안 제68조는 추모사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추모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 구성과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 지원·추모위원회와, 이수진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상 추모위원회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¹⁸⁾, 특히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자 또는 유가족이 지원·추모위

1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정안 간 차이가 있음.

한편, 김은혜의원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인, 위원: 관계부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와 비교할 때,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한다는 점, 관계부처 장관과 피해지역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수진의원안 및 전진숙의원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상 추모위원회(심의·의결사항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없음,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와 비교할 때, 추모사업 외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서삼석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8조(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상 추모위원회와 유사함.

다음, 김은혜의원안 제24조, 이수진의원안 제7조와 전진숙의원안 제11조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수진의원안 제6조제6항 및 전진숙의원안 제30조제6항은 지원·추모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지원조직과 피해자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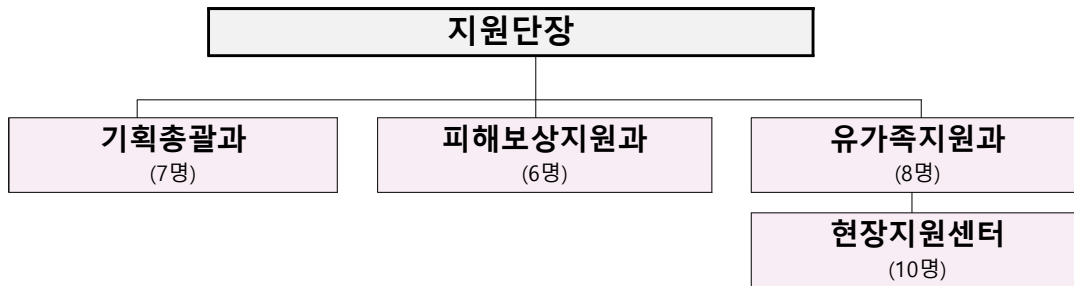
참고로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 소속 ‘12·29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 조직으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1.20)

* 사고 수습,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한 통합지원센터(12.29~1.19)에 이어 유가족 지원 지속

** 중앙부처(국토부·행안부·국조실·복지부), 지자체(광주시·전남도), 공항공사 인력으로 구성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원 신청, 유가족과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¹⁹⁾

그리고 이수진의원안과 전진숙의원안은 자문단의 구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등은 대체로 항공사고나 관련 법률 사항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이해, 추후 「항공·철도 사고

19) 참고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 중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될 수 있는 공청회²⁰⁾에서의 의견 개진 등에 있어 자문단이 피해자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민·관 합동 위원회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피해자 지원사업 및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속적·안정적 피해자 지원업무 수행이 기대됨.

아울러, 피해자 지원단 설치 규정의 경우 소관부처 의견을 고려하여 지원조직 설치 근거만 법률에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 정보체계 구축·운용과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지원사항 안내, 문의게시판 활용 등 피해자와의 소통채널 구축·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고조사 과정·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개진 등 권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7조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원·추모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지원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설립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기능을 통합하여 1개의 위원회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한편, 위원회의 사무기구(피해자 지원단) 설치 관련, 정부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²¹⁾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제(대통령령) 등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 규정할 사항으로, 김은혜의원안에 따른 지원단 관련 조문은 삭제하되 법률에는 지원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족협의회

지원위원회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추모위원회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 유가족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9. 지원의 원칙 및 참여 보장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문금주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 6 조 (지 원 의 원칙) ①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 원 의 원칙)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⑦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의 납부기한을 유예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 ⑧ (생략) ⑨ 「공무원연금법」 제40조 및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피해자 및 공무원인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피해자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피해자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	제22조(특별지원방안의 시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	제13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체 회복 지원) 국가는 12·29여객기사고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행) ① 국가는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체 회복 지원) 국가는 12·29여객기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체 회복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체 회복 지원) 국가는 12·29여객기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지원 원칙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신속 이행을 위한 조치 우선 시행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 지원					
		-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재정적 지원				
		-	-	국세 납부기한 유예, 가산세 면제	-	-	
		-	-	공무원인 피해자 및 공무원인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전액 지급	-	-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대 상 지 역	참사로 침체된 지역	피해지역	참사로 침체된 지역	피해지역	참사로 침체된 지역	
	기 타	-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 포함	-	-	-	

제정안은 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김은혜의원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에 따른 지원의 원칙과,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의 원칙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²²⁾

한편, 문금주의원안은 국세의 납부유예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음을 감안할 때 현행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²³⁾에 따라 이미 9개월 간 납부유예가 가능한 점과 가산세 면

2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4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23)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제가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의 적용관계²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금주의원안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특례도 함께 규정하고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24)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25)에 따라 퇴직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연금액의 25%)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서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피해자 등의 구체적인 피해상황, 공

25) 「공무원연금법」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무원 연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김은혜의원안 제8조, 문금주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 제56조는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방안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이수진의원안 제22조와 전진숙의원안 제13조는 피해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방안 시행 의무를 규정하면서 ①피해지역 또는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②영업 손실 보상방안을 포함할 것(이수진의원안)을 규정하고 있음.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12·29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됨에 따라 인근 지역 여행업계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²⁶⁾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손실의 산정 가능성,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음.

26)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장기 폐쇄로 2월 25일 기준 전라남도 147개 여행업체에서 924건의 계약취소가 발생하고, 광주광역시 141개 여행업체에서 1,806건의 계약취소가 발생하였음.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사례 】

지역	사업명(소관)	사업 내용	사업기간
안산	문화광장 활성화사업 (문체부)	안산 문화광장(안산 대표상권) 내 시각콘텐츠 구축, 계절별 테마프로그램 운영 등	'16
	안산시 연안정비사업 (해수부)	단원구 방아머리 일원 재해 완충구간 보수 보강, 호안 보수보강, 해빈 복원	'16~'19
	스마트허브 도로기반시설 정비 (국토부)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도로포장정비, 보도정비, 가로등)	'16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행안부)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 고잔동 외동 선부동 노후 불법·불량 간판 철거 및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	'16
	사회적기업제품 판매장 운영 (고용부)	사회적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조성 및 운영	'17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 (문체부)	김홍도 풍속거리 조성, 도심 캠핑 환경 개선 등	'17~'19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국토부)	주민교육 및 디자인 워크숍, 외동 기쁨 어린이공원·상상놀이터 등 시설 조성	'17~'21
진도	국가명승지 활성화사업 (문체부)	운림산방 내 운림사 기와 보수	'16
	장애인 테니스장 개보수 (문체부)	테니스장 조성 (하드코트 2면 개보수)	'16~'17
	진도여행 종합 안내센터 신축 (문체부)	관광안내소, 휴게실,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갖춘 여행안내센터 건립(군내면 녹진리)	'17~'19
	기항지(모도)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해수부)	선착장 확장, 물양장 신설 (조도면 모도)	'17~'18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국토부)	스토리로드·갤러리스퀘어 조성, 진도 소리 문화분수 설치, 수변길 정비 등	'17~'19
	진도항 연안여객 터미널 신축 (해수부)	진도항(舊팽목항) 여객터미널 1동, 주차시설, 휴게공간 조성	'17~'23

자료 : 국토교통부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지원의 원칙 규정과 관련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원칙화하고, 의견청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구제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문금주의원안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 종합지원, 15세 미만자 보험금 지급, 중증장애 질환자 특례 등을 지원의 원칙에 추가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조문으로 지원 가능한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국세 납부유예의 경우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 지원 중임

12·29여객기 참사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피해지역(무안군) 외에도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침체된 지역’으로 특별지원방안 대상 지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사혁신처

문금주의원안에 따른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연금제도의 취지상 수급자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급률 차등이 불가피한 점, 부부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 감액제도의 도입취지(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특정 사안에 따라 연금 지급률을 인상한 전례가 없는 점,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만 유족연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전라남도

이번 참사로 인한 여행업계 등의 귀책사유 없는 피해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지원방안에 손실보상방안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침체 극복 및 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무안공항의 사고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운항 체계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특별활성화 대책 수립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10. 지원금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9조(생활지원금등) ① 국가는 희생자 및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지원금: 15세 미만인 희생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1조에 따른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12조(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금은 15세 미만 희생자가 제1항에 따른 단체보험에 대하여 가입이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제54조(지원의 원칙) ⑤ 국가 등은 「상법」 제732조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15세 미만 희생자가 제1항에 따른 단체보험에 가입이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지급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급의 기준·절차 등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생활지원금	목적	피해자의 생활 보조				
	특례 적용기간	1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추모위원회 결정	-	1년 이내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결정	-	1년 이내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결정
의료지원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수단	지원금 지급		보험금 지급	지원금 지급	-
	수준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 상당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준 고려	-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준 고려	-

제정안은 피해자의 생계 지원과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을 위하여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임.

관련하여 각 법안의 지원사항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유사함²⁷⁾.

한편, 김은혜의원안 제9조제2항은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칙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²⁸⁾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임.

다음, 김은혜의원안 제9조제3항, 문금주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 제57조제3항은 생활지원금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²⁹⁾

27)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활지원금(1회 지원)은 희생자 가구에 구성원 4인 기준으로 259만원, 구조자 가구에 4인 기준 129만 5000원, 총 약 9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지원금(2029.4.15.까지 발생한 비용 대상)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 말까지 총 59,002건, 약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김은혜의원안 제29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수진의원안 제34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본문 미적용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안 제11조제3항 및 전진숙의원안 제14조제3항은 그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³⁰⁾하고 있는데, 「상법」 제732조³¹⁾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어, 이번 참사의 15세 미만인 희생자³²⁾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김은혜의원안에 따른 기타지원금 및 이수진의원안과 전진숙의원안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12·29여객기 참사 희생자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민안전보험 개요 】

□ 보험개요

- (개념)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피보험자 또는 사망 시 법적상속인
 - ※ 주민등록 기준 지자체에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광주·전남·무안 모두 가입)

자료 : 국토교통부

31)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대상자는 8명인 것으로 파악됨.

중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 문금주의원안도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등은 「상법」 제732조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29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민안전보험금 추정액은 총 90억 7,000만원 수준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피해자의 생계안정, 사고에 따른 질병·부상·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법례와 같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15세 미만 희생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15세 미만 희생자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상당액의 기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보건복지부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사고수습 총괄부처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특례의 기간을 정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소득, 재산 산정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례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의료지원금과 관련하여 명확한 책임주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주체가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필요 시 소관부처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타당함.

3) 법무부

김은혜의원안에 따른 특별지원금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제 약정을 체결하여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 중으로 특별지원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 거주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공백 발생이 우려됨.

한편, 문금주의원안과 관련하여 「상법」에 따라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 내용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는 제외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여 계약체결 당시 보험사고로 고려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고, 보험금의 지급 주체는 보험회사이므로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므로, 일반 희생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을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4) 유가족협의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및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동의함.

11. 심리지원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문금주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1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및 12·29여객기 사고 당시 피해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 구조·복구·치료·수습·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	제1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은 피해자 등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등에 관한 국가 등의 지원 의무를 마련하고 있음.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심리 지원 지원 대상	심리상담 등	피해자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자	구조복구치료 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		구조복구치료 수습 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피해자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³³⁾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³⁴⁾

3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심리상담 등의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문금주의원안과 서삼석의
원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를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피해자³⁵⁾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은혜의원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과 유사하게 지원 대상에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구조·사고 수습 등에 참여한 사람도 지원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
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참고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 지급현황 】

구분	인원(명)			건수(건)			금액(백만원)		
	계	신체	정신	계	신체	정신	계	신체	정신
2014	865	865		6,089	6,089		760		760
2015	570	570		6,510	6,510		827		827
2016	190	175	43	1,851	1,563	288	108	98	10
2017	81	22	61	592	73	519	32	8	24
2018	335	287	94	7,570	6,730	840	1,348	1,251	98
2019	359	307	102	7,342	6,465	877	1,104	1,006	97
2020	393	345	119	6,888	5,652	1,236	1,169	1,067	102
2021	385	336	129	7,539	6,414	1,125	1,115	1,051	104
2022	385	339	115	6,345	5,025	1,320	959	882	77
2023	407	365	142	8,296	6,884	1,412	1,561	1,451	110

자료 : 보건복지부

35) 문금주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제3항의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2·29여객기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수진의원안 및 전진숙의원안은 피해자와 구조·사고 수습 등에 참여한 사람은 포함하고 있으나,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인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심리적·정신적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정신질환 등의 치료 지원을 위해 입법례와 같이 심리상담, 검사·치료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본인 외에 ①배우자, ②사고 당시 구조·수습에 참여한 자도 트라우마를 호소할 수 있으므로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심리지원을 제공 중으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2. 근로자의 치유�휴직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문금주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12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큐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큐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제19조(근로자의 치유큐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큐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큐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큐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큐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큐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큐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큐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큐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큐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툐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의 치유툐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툐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근로자의 치유툐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툐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근로자의 치유툐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툐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근로자의 치유툐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툐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치유툐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에게는 해당 휴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치유휴직	신청 기한	법 시행 후 1년 이내	법 시행 후 3년 이내	법 시행 후 1년 이내	법 시행 후 3년 이내	법 시행 후 1년 이내
	휴직 기한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불리한 처우 또는 해고	불가				
치유휴직 지원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허용				
		-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허용				
치유휴직 지원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³⁶⁾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3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김은혜의원안, 문금주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동일하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수진의원안 및 전진숙의원안은 제정법률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 수준의 치유�휴직 신청기간과 휴직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은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금주의원안은 이러한 단서 규정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주의 귀책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입법례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상 의무(불이익 금지 포함)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치유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고용유지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치유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주의 휴직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고용노동부

여객기 참사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근거를 규정한 동법 제정 취지에 공감함. 참사 피해 근로자간 형평성과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유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치유휴직 신청기간, 휴직기간 등은 유사한 목적으로 규정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동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관련 하위법령 제정 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재원 마련 및 사업 운영 주체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족협의회

트라우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치유휴직 신청기간 및 그 기간은 이수 전의원안 또는 전진숙의원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13. 교육비 지원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14조(교육비 지원 등)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 당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이었던		제21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이었던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4조(지원의 원칙) ④ 국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생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돌봄 및 교육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문금주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교육비 지원 대상	탑승자 중 생존자,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참사 당시 재학 중인 학생	피해자 중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희생자의 미성년 자녀	피해자 중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특별전형	-	참사 당시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대학 등은 입학정원 1% 내 별도 정원으로 특별전형 실시 가능	-	참사 당시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대학 등은 입학정원 1% 내 별도 정원으로 특별전형 실시 가능

12·29여객기 참사의 피해자 또는 그 자녀가 경제적인 사유로 학교교육을 지속하는 데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은 이들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 간 구체적 지원대상, 특별전형 규정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은혜의원안은 참사 당시 “여객기 탑승객 또는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진의원안 및 전진숙의원안은 “피해자(여객기 탑승객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이었던 경우” 대학 등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문금주의원안은 “희생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돌봄 및 교육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국가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³⁷⁾은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세월호 승선자 또는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³⁸⁾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3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시행일로부터 1년 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³⁹⁾으로 이미 무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⁴⁰⁾에 따라 무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4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4·16세월호참사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2015년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료 등은 해당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지원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은 교육부장관이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의 범위)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39)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0)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수업료 등의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등교육 특별전형의 경우 타 수험생과의 형평성, 입시 공정성 등 논란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유가족협의회

배상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피해자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4년 간 대학 등록금 면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4. 긴급복지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문금주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15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제2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 이 돌 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 이 돌 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 이 돌 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12·29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③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활동 지원		③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다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활동 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12·29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지원의 원칙) ⑥ 희생자의 성년자녀 중 중증장애 질환자는	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산출에 특례를 적용받는다.		

가. 검토의견

제정안은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긴급지원⁴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 아이돌봄서비스⁴²⁾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41) 참고로, 긴급지원에 따른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87만 2,700원이 지급될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있도록 하며,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긴급복지 지원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간주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가능				
미성년 보호대책	참사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장애인 지원	참사로 친권자가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월한도액 별도 지정 가능	참사로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월한도액 별도 지정 가능	희생자의 성년자녀 중 중증장애 질환자는 활동지원급여 산출 특례 적용 가능,	이수진의원안과 같음	-
	-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간주	-	-

이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⁴³⁾과 유사한 내용임.

4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① 위기 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용	73만500원/월(1인 기준) 187만2,700원/월(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만8,900원/월 이내 (대도시 1인 기준) 66만2,500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만2,000원/월 이내(1인 기준) 149만4,100원/월 이내(4인 기준)	6회
	②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용품비	초 12만7,900원/분기 중 18만 원/분기 고 21만4,000원/분기	4회
		기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③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으로 연계	제한 없음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을 것임.

한편, 제정안은 12·29여객기 참사로 친권자가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를 월 한도액의 범위(100~798만원, 특별지원 급여 별도)에서 제공 중⁴⁴⁾이나, 12·29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장애인을 부양하던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입법례와 같이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법」 요건과 무관히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하는 특례를 통해 생계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이 돌봄 지원법」 상 서비스 우선제공 특례로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방지하며 피해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친권자가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하는 특례로 사회적 보호가 더욱 필요한 장애인의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원

2) 보건복지부

친권자가 사망한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추가제공에는 동의하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장애인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중증’을 구분할 실익이 적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은 개별법령에 따라 결정되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월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원칙상 어려우므로, 친권자가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족협의회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등 특례, 미성년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및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특례 필요성에 동의함.

15. 법률지원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20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법률지원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국가가 비용 부담 가능)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12·29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배상 등에 있어 법률상담 또는 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규정하고 있음.⁴⁵⁾

나. 유가족협의회 의견

법률 상담, 소송 대리지원 등 필요성에 동의함.

4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금융부담 완화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16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금융부담 완화	국가등은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제정안은 12·29여객기 참사의 피해자가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⁴⁶⁾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입법례와 같이 관계기관 간 협조 근거를 법제화하여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조치(금리인하, 상환유예 등)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4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7. 공동체 회복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17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4. 건강·복지·교육·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복합시설을 국가 및 제25조에 따른 사단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제정안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목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				
	비용	피해자 참여 시 국가등이 비용 지원 가능				
	기타	프로그램 개발 시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기능	심리상담과 건강·복지· 돌봄·노동· 문화 등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과 건강·복지· 돌봄·교육· 노동·문화 등 서비스 제공	김은혜의원안과 같음		
	방문 서비스	필요 시 제공	-	필요 시 제공		
	협업의 대상	국가 및 사단 또는 재단	국가 및 유가족단체			
	국가 비용 지원	재량 (일부)	의무 (전부 또는 일부)	재량 (일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⁴⁷⁾.

4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토닥토닥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웃 릴레이 간담회 등 12개 프로그램(25개 사업)을 시작으로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상담·조언 등의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었고, 안산시 단원구에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식·치유, 소통·화합을 도모하는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 2024년 8월 착공되었음.

으로 정한다.

-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입법례와 같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시설 운영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으로 피해자와 그 외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지자체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원주체) 외에도 피해자 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여 맞춤형 시설을 유도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

복합시설은 피해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활력을 위한 공간이며 기존 포항⁴⁸⁾·안산사례와 유사하게 지자체와 국가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사단·재단 또는 유가족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와 협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족협의회

유가족 등의 치유를 위해 유가족 쉼터 제공 및 그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함.

48)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8. 트라우마센터 설치

김은혜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19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마음회복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음회복지원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마음회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전진숙의원안
트라우마센터	설치 여부	임의규정	강행규정
	설치 주체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비용 지원	-	국가가 운영비용 지원 가능

제정안은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종합적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또는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치유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서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⁴⁹⁾

피해자의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식으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방식 외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⁵⁰⁾과 같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⁵¹⁾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트라

49)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안산 마음건강센터는 지난 2021년 건립을 시작하여 2024년 11월 준공되어 운영 중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 피해자들의 상황 및 의견과 관련 지역의 기반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피해자 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전용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탄력적인 설치·운영을 위해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임의규정으로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1. 심리지원에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건복지부

현재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등 기존 재난심리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난별 개별 트라우마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과거 입법례 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난심리지원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필요 시 통합재난심리지원체계에 인력, 조직 보강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광주광역시

사고 직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가족의 심리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4) 유가족협의회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함.

19. 추모사업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문금주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20조(추모사업 등 시행 등)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의 추모와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및 재난 및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 건립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의 건립	제29조(추모사업 및 장기추적 연구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의 건립 및 추모행사 개최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의 건립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22조(추모사업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시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6. 추모행사 개최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5조에 따른 사단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추 모 비 (이하 “추 모 시 설” 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추모사업 시행 등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⁵²⁾의 관련 규정과 유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사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준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추모사업	목적	추모와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재발방지				
	내용	-	추모공원 / 추모기념관/ 추모비				
			추모행사	-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추모 기념관	-	-	추모기념관의 시설, 장비, 전문인력 갖출 의무			
	지자체 사업 시행 시 비용 지원	재량	의무				
기타	-				피해자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	
추모 시설	명칭	공모 등으로 국민 의견 수렴	-	-	공모 등으로 국민 의견 수렴	-	
		사단 또는 재단과 협의			-		
	위치	-				피해지역 내 참사현장 인근	
	특례	○	×	○			

한편, 각 제정안은 ①추모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지 여부, ②추모사업의 목적, ③지방자치단체가 추모사업 시행 시 국가의 지원 의무화 여부, ④추모시설 등의 명칭·위치 결정 방식 규정 여부, ⑤장기 추적 연구 시행, ⑥추모기념관 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전문인력 운용 의무 규정 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를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추모기념관(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2016년 4월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2024년 11월 추모공원(안산시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가 착공하였으며,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관이 설립·운영 중임.

나. 정부 의견

1) 국토교통부

추모사업 시행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지속적 사업 관리와 사고 예방교육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희생자 추모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개발규제 등으로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추모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자체의 추모사업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은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원·추모위원회가 추모시설의 명칭을 정할 때 대국민 의견수렴 외에도 피해자 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여 피해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

이수진의원안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에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추모사업에 ‘추모행사 개최’는 없고, 추모행사는 개최 종료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기한 없이 행사를 지속하여야 하는 점, 안 제27조(재단 출연 등)제1항제1호에 따른 ‘추모제의 시행’과 제25조의 ‘추모행사’ 사업과도 중복이 우려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 사단/유가족협의회 및 재단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25조(사단 또는 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29여객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사단 또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항공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항공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제27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3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1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설립한 사단 또는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본다. ③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사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유가족협의회 의 설립·운영 등) ① 유가족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단체(이하 “유가족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유가족협의회(「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법인을 말한다)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26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사단 또는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으로 정하되, 사무공간 및 사무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사단	명칭	-	유가족협의회	미규정	미규정
	지원 등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 가능	재정적·행정적 지원 (사무공간 및 사무인력 등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시설·장비 등의 지원 포함)		
	공익법인 간주 조항	○	×		
	기탁금품 접수 특례	○	×		
재단	지원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 가능			
	기탁금품 접수 특례	○	×	○	○

김은혜의원안은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고 또는 참사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10년 간 보조·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⁵³⁾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수진의원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 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안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등을 위한 유가족협의회(사단법인) 설립·운영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⁵⁴⁾도 유사한 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지난

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1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

2019년 2월 4·16재단(2018년 7월 설립)이 지원·추모위원회로부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단으로 선정되었음.

한편, 「법인세법」 및 그 하위법령⁵⁵⁾에 따른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

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

면 기부금 관련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여 기부자가 법인세, 소득세⁵⁶⁾ 상 혜택을 볼 수 있음.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018년 6월 「법인세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고, 4·16재단도 2018년 12월 지정받았음.

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6)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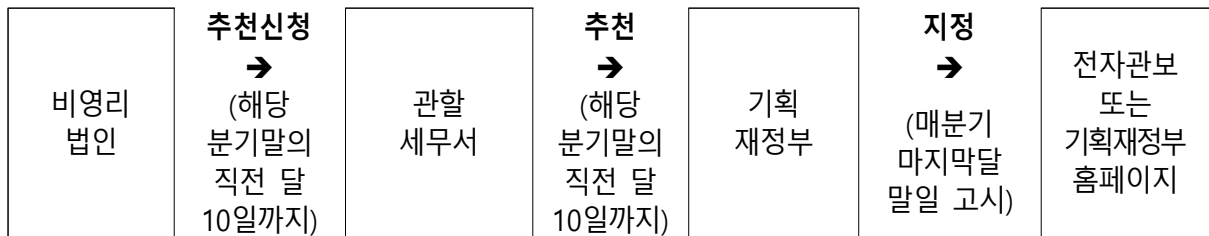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관련하여,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은혜의원안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으로 보임.

【 공익법인 지정 절차 】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이와 같은 공익법인 간주 조항에 따른 기부금 특례가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⁵⁷⁾과의 적용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입법례⁵⁸⁾는 특정 단체에 출연

5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 경우 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각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추모사업, 항공 안전사고 예방, 피해지원 등을 위한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출연·보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단법인과 별개로 유가족 단체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추모사업, 항공 안전사고 예방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입법례와 같이 지원·추모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은 특례로 기탁금품 접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 간주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개별법에서 공익법

5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4조(세제 지원 등)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6조(세제지원 등)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인을 지정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아, 다른 공익법인들과 같이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지정·고시함이 타당함.

3) 행정안전부

유가족협의회 설립·운영을 법률로 정하고 국가 등이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없으므로 재난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 또는 유가족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공익법인 간주 특례 조항이 필요함.

21. 상황보고 및 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단 구성 특례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제29조(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보고 등) ①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는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0조(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 ① 국회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이하 “사고조사단”이라 한다)의 사고조사관을 각각 2인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임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위촉·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임명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과 사고조사관의 업무의 범위는 12·29여객기참사의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5조(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보고 등) ①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6조(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 ① 국회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이하 “사고조사단”이라 한다)의 사고조사관을 각각 2인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임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위촉·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임명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과 사고조사관의 업무의 범위는 12·29여객기참사의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가. 검토의견

구분		이수진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상황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 주체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	
	요청 대상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조직	
	의무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견 개진권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의 의견개진권 규정	
사고조사 특례		국회는 사고조사위원 및 사고조사관 2인 추가 위촉·임명 요청 가능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위촉·임명 의무	

제정안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가 관계기관등에게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조사 및 피해지원 관련 알 권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⁵⁹⁾

5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제정안은 12·29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고조사에 대해서 국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2인과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 2인을 추가적으로 위촉·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위촉·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조사의 투명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 사고 및 사건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조사기구는 정치적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의 간섭이나 압력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법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ICAO Doc 9756 (항공 사고 및 사건 조사 매뉴얼) 中> Part I — Organization and Planning Chapter 2 - THE 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 2.1 PRIMARY LEGISLATION AND STRUCTURE 2.1.7 The 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 must be strictly objective and totally impartial and must also be perceived to be so. <u>The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legislatively in such a manner that it can withstand political or other interference or pressure from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industry.</u> Many States have achieved this objective by setting up their 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 as an independent statutory body or by establishing an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 that is separate from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In these States, the 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 reports directly to Congress, Parliament or a ministerial level of government that is different than the Ministry which also oversees State aviation authorities; in general, the Ministry of Transport. Part I — 조직 및 계획 Chapter 2 - 사고 조사 기관
--

2.1 주요 법률 및 구조

2.1.7 사고조사기관은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완전히 공정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그렇게 보이도록 해야함. 이 기관은 정치적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의 간섭이나 압력, 산업계로부터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법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많은 국가들이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 사고조사기관을 설치하거나 사고조사조직을 민간 항공 행정과 분리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들은 사고조사기관이 의회나 다른 정부 부처의 고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 일반적으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와 같은 국가 항공 당국을 감독하는 부처와는 다른 부처에 속해 있음.

자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특정 사고조사에 대해 국회에서 요청한 위원 및 사고조사관을 위촉·임명하는 경우 추후 제3자로부터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려되고, 특히 사고조사관의 경우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에 6개월~1년이 걸리는 등 추가 임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국회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위촉·임명 요청은 독립성, 객관성, 업무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은 사고조사당국이 조사의 수행이나 객관성에 간섭할 수 있는 기관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제기준 및 국내법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사고조사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오로지 유사 사고 재발방지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적 조사로, 모든 정치적 영향, 사법 또는 행정절차 및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성·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함.

이러한 국내외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그 사고조사단 업무에 사고의 이해관계자인 피해자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특례를 적용하여 외부 인원의 조사과정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사고조사의 기본인 독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추후 조사 결과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공정성·객관성 관련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되며, 임용 후에도 정식 사고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초기 및 직무교육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되는 등 특정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관을 채용하고 조사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될 수 있어 형성평 논란의 가능성도 있음.

3) 행정안전부

사고조사관은 공무원으로, 공무원 임명은 장관 등 행정부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유가족협의회

국회, 유가족단체 등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의견개진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추후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사고조사단 구성과 관련한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2. 보칙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31조(비밀 준수 의무) 지원 · 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사람,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인, 자문단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비밀 준수 의무) 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비밀 준수 의무) 심의위원회 또는 지원·추모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비밀 준수 의무) 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추모위	제33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추모위	제69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	제39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등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단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4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0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0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지원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12·29 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	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12·29 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	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7조(12·29 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이하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조사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추모위원회 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가. 검토의견

제정안은 비밀준수 의무, 자격사칭 금지, 권리의 보호, 부당이득의 환수, 12·29여객기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보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례⁶⁰⁾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임.

6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6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3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7조(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문금주의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비밀준수 의무 주체		-	지원·추모위원회· 지원단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 원이었던 사람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모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 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 원이었던 자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모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 원이었던 자
			-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지원·추모위 원회등의 위임·위탁 등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인	조사위원회등 의 위임·위탁 등 에 따라 조사에 참여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	심의위원회등 의 위임·위탁 등 에 따라 조사에 참여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	조사위원회등 의 위임·위탁 등 에 따라 조사에 참여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 간 단 체 와 그 관계자
			자문단의 구 성원 또는 구 성 원 이 었 던 사람	-	-	-
자격사청 금지 대상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직원	지원·추모위원회등 위원·직원, 자문단의 구성원	조사위원회등 위원·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심의위원회등 위원·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조사위원회등 위원·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권리 양도·압류·담보제공 불가				
부당 이득 환수	주 체	국가등	국가			
	징 수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국세강제징수의 예			
기록물에 대한 조치		×	○	×	○	○
벌칙적용 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입법례와 같이 자격사칭 금지, 양도·담보·압류의 제한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칙 조항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원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지원·추모 위원회 관계자의 비밀준수, 공무원 벌칙 의제 등 보칙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3. 벌칙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3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사람 2. (생략)	제72조(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사람 2. (생략)	제79조(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를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4. (생략)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32조(미수범) 제31조제1항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생략)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정당한 이 유 없이 제28 조제2항에 따 른 요구에 응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8조제1 항제3호에 따 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 구를 받고 허 위의 자료 또 는 물건을 제 출한 사람 3. 정당한 이 유 없이 제29 조에 따른 동 행명령에 응하 지 아니한 사 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28조제1 항제4호에 따 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③ (생략)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28조제1 항제3호에 따 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 구를 받고 허 위의 자료 또 는 물건을 제 출한 사람 2. 정당한 이 유 없이 제28 조제2항에 따 른 요구에 응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 유 없이 제29 조에 따른 동 행명령에 응하 지 아니한 사 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28조제1 항제4호에 따 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2.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가. 검토의견

제정안은 부과되는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⁶¹⁾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6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48조(미수범) 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9조(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미수범 처벌)	-	-	-	-
	-	상황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	상황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
	-	2차 가해행위 금지 의무 위반	-	2차 가해행위 금지 의무 위반	-
	-	-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감정인 폭행·협박, 직무집행 방해	-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감정인 폭행·협박, 직무집행 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사칭 금지의무 위반	-	-	-	-
	피해자 지원 명목 영리 활동 금지 의무 위반	-	-	-	-
	-	-	조사대상자·참고인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 훼손	-	조사대상자·참고인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 훼손
	-	-	청문회 관련 위반	-	청문회 관련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준수의무 위반			
		자격사칭 금지의무 위반			
		피해자 지원 명목 영리 활동 금지 의무 위반			
		-	2차 가해행위	-	-
과태료	-	-	진상조사 관련 의무 위반	-	진상조사 관련 의무 위반

각 제정안은 내용에 따라 그에 대한 벌칙 규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여부에 따라 이를 정리할 필요할 것으로 보

이고, 자격사칭 금지 등 위반에 대한 벌칙의 수준(김은혜의원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수진의의원안 · 문금주의의원안 · 전진숙의원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다소 상이⁶²⁾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입법례와 같이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미수범 포함), 자격사칭 등에 대해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원·추모위원회 관계자의 비밀준수의무를 보칙에 규정하는 경우 벌칙 규정도 추가로 마련하여 보칙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2)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4. 부칙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등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추모위원회 등의 위원 및 직원의 위촉·임명, 자문단의 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공포, 유가족협의회 설립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 제1항에 따른 11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추모위원회 등의 위원 및 직원의 위촉·임명, 자문단의 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공포, 유가족단체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 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가 12		③ 조사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 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희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휴업·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희직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희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희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 준비행위, 정신질환 등 치료·치유희직 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김은혜의원안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부칙과, 이수

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은 「10·29이
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정 시 부칙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⁶³⁾

6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3115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 및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심의위원회 및 지원·추모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
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특례) 제2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
행일까지 피해자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
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휴업·휴직을 지원한 기간 또는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20427호, 202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에 착수하여야 한다.

구분		김은혜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즉시			
준비 행위	지원 추모위	○	○	×	○	×
	자문단	○	○	×	○	×
	조사위	×	×	○	×	○
중복지원 적용례		○	×	×	×	×
심리치료, 치유휴직 및 그 지원 특례		○	×	×	×	×

김은혜의원안 부칙은 시행령 마련 등을 위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수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전진숙의원안 및 서삼석의원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공백없는 지원을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면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즉시 시행이 필요한 규정들의 시행일 및 적용례 등을 따로 설정하는 등 조문별 시행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공포일 3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법 시행일까지 정신질환 등의 치료비용, 근로자
치유휴직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을 소급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공
백을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유가족협의회

시행일과 관련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동의하나,
시행령 등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함.

문 의 처
02)6788-558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장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0·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징계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 ②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 ⑧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9조(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절 청문회

제33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8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검증) ①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10·29이 태원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②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4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0·29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그 밖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권고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한다.
- ⑥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⑫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10·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